

신탁계약서 변경안내

1. 대상 펀드

- 한화 스마트 법인 MMF 1호

2. 변경사유

- 종류 C-w 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

구분	현행	변경후
제3조(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종류 C-w 수익증권 :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,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종류 C-w 수익증권 :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,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,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부 칙	<u>〈신 설〉</u>	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(2026.09.16)</u>